

사천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(안) 심사보고

(의안번호 제21호 2002. 5. 17)

총무위원회
2002. 5. 27(월)

1. 심사경과

- 가. 2002. 5. 17 사천시장 제출
- 나. 2002. 5. 17 총무위원회 회부
- 다. 2002. 5. 23 사천시의회 제65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상정

2. 제안설명요지(사회과장 강대평)

가. 제안이유

-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(1999. 9. 7법률 제6024호)으로 대체 제정됨에 따라 조례상 적용되고 있는 법률 조항을 현행 법률에 맞게 정비코자함.

나. 주요골자

- “생활보호법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자”를 “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”로 함(안 제2조)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박명돈)

- 개정조례안은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대체 제정됨에 따라 조례를 현행법률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서 법적인 문제점은 없고, 원안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

5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 : 없음